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7. 6.



농림축산식품부

I 개정사유

-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17.4.13)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을 추진코자 함

II 주요 개정내용

-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의무화(법 제3조의4제3항)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의 농가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주기적 방역교육 이수 의무화(연1회)
- ②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 사육제한(법 제3조의4제7항)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 제한 근거 마련
- ③ 방역 관리 책임자 제도 마련(법 제5조의2)
 - 대규모(10만 마리 이상)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방역관리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고, 방역 전문가 채용 또는 계약을 통해 방역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④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법 제11조제1항)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5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 추가(법 제17조)

- 일선 혼선방지를 위해 축산법의 방역시설 기준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일원화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소독설비 기준만 있음

6 축산차량의 범위 확대(법 제17조의3제1항)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관리 강화

7 축산차량 표시의무화(법 제17조의3제11항)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의무화

8 질병관리등급 부여업무를 시·군·구까지 확대(법 제18조)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

9 일시이동중지 명령 권한 확대(법 제19조의2)

-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농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 추가

10 ~~살처분~~ 보상금 감액 항목 추가(법 제48조제3항)

-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축산차량 등록, 무선인식장치 장착, 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위반 시 보상금 감액 항목 추가

참고자료**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를 “재수립하여야”로 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갓추어야”를 “갓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로 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의 가축사육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의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육제한 명령을 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제한기간, 대상 축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전파확산 요인·차단방역·소독방법·진단요령·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①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소유자등이 관련 업체 또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받는 경우 방역관리 책임자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 임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으로, “처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을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의사나”를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소속 관계자 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독설비를”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깎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로,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한다”를 “등록지가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깎짚·난좌·가금부산물 운반
2.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3.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

는 차량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차량 출입정보의 관리가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제17조의3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17조의3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시설출입차량임을 표시하는 마
크를 차량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시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⑫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23조제1항”으로,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제6항”을 “제3조의5제1항, 제5조제3항·제6항”으로,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제56조제1호 중 “수의사”를 “수의사,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소속 관계자”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제3호의4부터 제3호의6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3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제60조제1항제5호 중 “소독설비를”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를 제5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5.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6.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임을 표시하는 마크를 차

량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u>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u> 한다. ⑤ (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재수립하여야</u> ----- ----- --.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② (생략)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율타리·담장 등 방역시설을 <u>갖추어</u> 야 한다. ④ ~ ⑥ (생략) <u><신설></u>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u>갖추고</u> <u>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u> <u>여야</u> --. ④ ~ ⑥ (현행과 같음) <u>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u>

의 가축사육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의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육제한 명령을 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제한기간, 대상 축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 ③
(생략)

<신설>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
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소비자 단체 및 국제
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질병
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전파확산
요인·차단방역·소독방법·
진단요령·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
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① 가
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소
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

제7조(가축방역관) ① ~ 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소유자등이 관련 업체 또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받는 경우 방역관리 책임자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 임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가축방역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⑦ (생략)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갈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을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
 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⑧ (생 략)

⑨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할 수 있다--

 -----.

1. 가축·원유·알·동물약품·
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
비·왕겨·쌀겨·톱밥·깎짚
·난좌·가금부산물 운반

2.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
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
계수리

3.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
한 인력운송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
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차량 출입정보의 관
리가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목적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⑩ (생 략)

<신 설>

<신 설>

-----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시설출입차량임을 표시하는 마크를 차량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시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⑫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48조(보상금 등) ①·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및 제23조제1항-----

----- 제24조제1

항 및 제2항-----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48조(보상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제3조의5제1항, 제5조제3항

· 제6항-----

13조제3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 5. (생략)

④ (생략)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생략)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
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및 가축의 소
유자등

2. ~ 5. (생략)

----- 제17조제1항·제2
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
제5항 --

2.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17조
의3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

-----.

1. -----

---- 수의사,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소속 관계자

--

2. ~ 5.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3의2. 3의3. (생략)

<신설>

3의4. (생략)

4. 4의2. (생략)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5의2. 5의3. (생략)

<신설>

5의4. (생략)

<신설>

제60조(과태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3의4. 3의5. (현행 제3호의2 및 제3호의3과 같음)

3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6. (현행 제3호의4와 같음)

4. 4의2. (현행과 같음)

5.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

5의2.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7. (현행 제5호의4와 같음)

5의5.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신고를

<u><신 설></u>	<u>하지 아니한 소유자</u>
	<u>5의6.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u>
	<u>하여 시설출입차량임을 표시</u>
	<u>하는 마크를 차량외부에 부착</u>
	<u>하지 아니한 소유자</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